

石油事業法 시행령改正의 背景과 主要內容



徐 周 錫

(動力資源部 油政課長)

1. 改正의 背景

石油事業法施行令(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81年 12月 31일자로 改正公布되었다. 이로써 시행령은 75年 12月 26일 制定된 후 6번째의 改正을하게 되었다.

1974年 第1次 石油波動이 끝난 以後 國際原油市場에서는 한동안 供給過剩現象과 더불어 原油価格의 安定추세가 持続되었다. 그러나 1977年에 들어서 사우디와 쿠웨이트原油価格가 二元化 됨으로써 國際原油価格의 多元化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따라 石油事業法(이하 “법”이라 한다)에 石油事業基金의 設置 根據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78年末 第2次 石油波動 以後에는 國際原油価格의 多元化現象이 本格화되기 시작했고 이란의 輸出物量減少로 供給不足現象이 나타나게 되어 原油確保마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國際原油事情에 따라 國內 精油社別로 原油導入価格이 相異해지게 되었고, 社別 損益差異가 過多하게 発生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非常時에 對備한 備蓄의 必要性이 더욱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政府는 1979年 施行令을 改正하여 法에 規定되어 있던 石油事業基金制度를 運用하게 되었다. 즉 石油事業基金을 安定基金과 備蓄基金으로 区分하고 徵收節次, 基金의 用途等에 関한 細部 規定을 두개

되었다.

그러나 多元化되어 있던 原油価格를 平準化하여 國內石油製品価格을 安定시키기 위하여 造成되고 있는 安定基金은 그간의 運用過程에서 볼때 石油產業의 自律性 提高보다는 政府依存度를 深化시킨 面도 있었으며, 低価原油導入意慾을 低下시키는 等의 問題点이 있었다.

또한 法에는 石油事業基金을 石油開発事業에도 使用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었으나, 施行令에 根據規定이 없어 現在 國内外에서 活発하게 進行되고 있는 石油開発事業을 本格的으로 뒷받침 할 수 없는 問題가 있었다.

이에 政府는 関係部處 및 專門家를 포함하는 油價政策實務作業班을 構成하여 油價制度를 中心으로 한 石油政策의 改善方案을 講究하게 되었으며, 그結果를 금번 施行令改正에 重點的으로 反映하게 된 것이다.

2. 改正의 主要內容

가. 石油精製業 許可基準 緩和(第5條)
從前에는 法第4條의 但書規定에 依하여 石油精製業의 許可對象에서 除外하는 石油精製業을 1日 100배 레이以下의 유통유를 生産하는 경우로 하였으

나, 許可対象에서 除外하는 石油精製業을 拡大하여 1일 2,000배 레ル 以下의 용제, 아스팔트, 윤활유를 生産하는 경우로 하였다.

이는 需給統制의 必要性이 적은 非燃料油의 경우 事業에의 參與를 自由化 시키고자 한 것이다.

나. 石油事業基金 徵收額 調整(第9條의 4)

우선 備蓄基金은 政府의 備蓄目標를 達成하는데 必要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는 1달러以上을 追加로 引上하여야 할 것이다, 国民經濟 및 家計負担을 고려하여 漸進的으로 對處해 나가기로 하고 금번에 50센트만을 引上하게 된 것이다.

다음 安定基金은 油価調整時마다 施行令을 改正하여야 하는 行政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導入原油 1배 레ル당 3달러 50센트 範圍內에서 動力資源部長官이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는 金額을 徵收하는 것으로 改正하였다. 앞으로는 油価調整作業의 바쁜 와중에서 施行令改正을 同時に 推進하기 위하여 関係부처를 들락거려야 했던 일등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또한 81年 4月19日 油価調整前까지 徵收해 왔던 基準価格과의 差額徵收條項을 削除하여 4.19価格調整時 制度改善 事項을 施行令에 反映하였다.

다. 輸出用 石油製品 生產에 所要된 原油에 대한 基金의 還給制度 新設(第9條의 4 第8項)

現在 国内の 精製施設能力은 지난 봄 湖南精油의 日 15만배 레ル 規模의 増設工事が 完工됨에 따라 日 79만배 레ル에 達하고 있으나, 現在 穩動水準은 日 50만배 레ル 程度에 미치고 있다. 이는 景气回復의 지연에 따른 石油類需要增加 추세 運轉 및 消費節約等에 起因한 것으로서 日 30만배 레ル 程度의 精製施設이 남아 도는 実情에 있다. 이와 같은 剰餘施設을 活用하는 方案으로서는 石油製品을 輸出할 것을 條件으로 原油를 導入精製하여 生產된 製品을 輸出하고 一定率의 加工手數料를 받는 受託加工貿易方法이 있으나 종전에는 施行令上 일단 輸入된原油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石油事業基金을 徵收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形態의 輸出入의 經濟性을 상실하게 되는 問題가 있었다.

이에 剰餘精製施設을 最大限 活用할 수 있도록 石油製品을 生產하여 輸出할 것을 條件으로 原油導入契約을 締結하고 그 契約에 따라 導入된原油를 精製하여 石油製品을 輸出하는 경우, 輸出된 石油製品生產에 所要된 原油에 대하여는 일단 納付했던 基金을 還給하여 주는 制度를 新設하게 된 것이다. 다만 輸出 石油製品生產에 얼마만큼의 原油가 所要되는지를 算出하는 方法은 技術的인 事項이 될 것이나 이는 動力資源部長官의 告示로 定하게 된다.

여기에서 受託加工 또는 貨加工이란 用語를 使用하지 않은 것은 貿易去來法과의 解釈上 問題가 야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貿易去來法上受託加工貿易은 原資材를 들여다가 生產된 製品全量을 輸出하는 경우만으로 解釈되고 있는 反面 石油製品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意味의 受託加工貿易이 事實上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受託加工 또는 貨加工이란 用語를 施行令에 使用할 경우는 基金의 還給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以上과 같이 基金의 還給對象이 되는 原油에 대하여는 安定基金에 의한 補填도 할 수 없도록 規定함으로써(第9條의 2 本文但書規定 新設) 基金의 徵收와 補填間의 衡平을 維持시켰다.

라. 石油事業基金의 用途調整(第9條의 5 第1項 및 第2項)

1. 備蓄基金의 用途

從前에 備蓄基金은 石油備蓄施設의 設備와 備蓄用石油購入의 경우에만 使用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追加하여 韓國石油開發公社의 石油備蓄 및 開發事業의 推進에 必要한 運營費를 補助할 수 있게 하였으며, 石油精製業者等 民間이 石油備蓄을 推進하는 경우 所要되는 資金의 全部 또는一部와 國内外 石油資源의 開發 및 探查에 所要되는 資金도 備蓄基金에서 融資할 수 있도록 하였다.

油開公은 設立된지 얼마되지 않은 関係로 아직 뚜렷한 収益事業을 갖고 있지 못한 反面 政府代行事業의 性格을 갖고 있는 石油備蓄 開發事業의 推進에 많은 運營費를 支出하고 있어 資本 잠식 현상이 招來되고 있었다. 이같은 資本 잠식 현상은 公社의 健全한 發展을 沢害하는 要因이 되므로 一定한範圍內의 公社運營費를 備蓄基金에서 補助할 수 있

는根據를 둔 것이다.

또한 石油備蓄에는 莫大한 費用이 所要되기 때문에 現在 国内の 民間備蓄水準이 未治한 実情에 있어 石油精製業者 石油販売業者 또는 主要 石油消費者가 石油備蓄을 함에 必要한 資金을 融資할 수 있게 하였으며, 產油國으로의 밭돌음을 위해 国内外에서 推進되고 있는 石油開発事業을 本格的으로 뒷받침하고자 開發 및 探查에 所要되는 資金을 融資할 수 있는 根據를 두었다.

備蓄基金의 融資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動力資源部長官의 告示로 定하게 된다. (第9條의 5 第3項)

② 安定基金의 用途

從前에 安定基金은 基準価格과 差額의 範囲안에서의 損失補填을 비롯하여 6 개項目의 用途에 使用되었으나, 이를 3 個項目으로 縮少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要約하여 図表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安定基金의 用途〉

從 前	改 正
1. 原油의 基準価格과 의 差額의 範囲안에 서의 損失補填	1. 左 同
2. 石油製品導入에 따 른 損失補填	2. "
3. 原油의 輸入에 따 른 換差損의 补填	3. 原油導入先 多邊化를 促進하기 위한 追加運送費의 补填.
4. 割増料, プレミ엄, 其他 輸入附帶費用,	4. 削 除
5. 石油製品価格 安定 에 寄與할 原油輸入 의 促進 奨勵	5. "
6. 其他 石油製品価格 平準化로 因하여 精 製業者에게 發生한 損失補填.	6. "

위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從前 第9條의 5 第2項 第3号乃至 6号를 削除하고 第3号에는 原油導入先의 多邊化를 推進함에 追加로 所要되는 運送費를 安定基金에서 补填할 수 있는 條項을 新設하였다. 이는 政府의 導入先 多邊化 政策을 効率的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며, 從前 规定에 依하

여 安定基金으로 補填하던 換差損, 割増料, 促進獎勵金等은 이미 지난해 4月 19日, 11月 29日 油價調整 価格에 反映시켰지만 이러한 問題들은 앞으로도 価格政策으로 解決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限定된 範囲内이지만 精油社의 政府依存度를 減少시켜 社間 競争을 誘導하고 高價原油 導入을 抑制하며 低價原油 導入을 促進하는 効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앞으로의 方向

以上에서 간략하게 나마 施行令의 主要改正內容 및 背景을 説明하였지만 아직도 石油事業法令에는 未備한 点이 있다. 例를 들어 보면 石油類製品의 品質管理 및 이의 团束에 関한 規定이 未備되어 있는 関係로 最近 市中에 범람하고 있어 石油類流通秩序를 紊亂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는 類似揮發油를 비롯한 不正油類에 效果的인 對策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燃油를 販賣하고 있는 副販店의 경우 現行 石油事業法令上에는 政府의 政策遂行을 뒷받침할만한 制度의 장치가 具備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石油事業法은 各種 許可 및 申告制를 規定하고 있고 政府의 広範囲한 調整命令制度를 規定하고 있는 바, 과연 이러한 制度가 自由競爭体制로 점차 転換되어 가고 있는 經濟構造의 基本方向과 모순되는 面은 없는지 또는 政府의 不必要한 関與가 介在될 要因은 없는지를 檢討하여 向後 改正에反映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아직은 OPEC의 原油価 単一化가 完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原油価 単一化가 定着되는 경우, 現在의 安定基金制度 및 基準原油価制度의 全面的인 再檢討가 不可避할 것이다.

앞으로 政府는 上의 모든 問題點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와 與件이 비슷한 日本, 自由中國 等 外國의 石油關係法令을 比較하여 民間專門家, 精油業界等의 意見을 들어 法令의 改正에 反映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精油產業은 営利를 追究하는 私企業이라는 側面과 國民生活의 基礎에 너지源을 供給하는 国家基幹產業이란 側面 즉 営利性과 公益性을 同時에 갖고 있는 点이 그 特徵이다.

이러한 相互 모순되는 兩面을 調和시킬 수 있는 方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